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50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이헌승·김선교·김도읍

강선영 · 서일준 · 서지영

박덕흠 • 고동진 • 유영하

정성국 · 윤상현 · 신성범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으로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현역 입영 대상자, 대체역 등의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음.

그런데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 대상이아님에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은 이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

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방위대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7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병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재병역 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조직) ① 민방위대는 20세	제18조(조직) ①		
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			
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 17의2. (생 략)	1. ~ 17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7의3. 「병역법」 제12조제3항</u>		
	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		
	아야 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		
	검사 •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		
	<u>한 사람</u>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